

조선시대 공작새 및 그 장식의 유입과 소비*

윤 승 희**

목 차

- I. 머리말
- II. 수입품 공작을 대하는 양면성
 1. 진기한 금수, 공작새
 2. 위계를 드러내는 공작 문양
- III. 깃털 장식으로 향유한 공작의 이미지
- IV. 맺음말

국문초록 | 공작은 조선에 서식하지 않았던 진기한 동물이었다. 공작은 대개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조정에서는 공작이 진헌될 때마다 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진기한 동물은 기르지 않아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이는 즐거움을 위해 무익함을 취하지 말라는 『서경』의 가르침이었다. 공작은 뽀내기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겐 귀한 선물이 겠으나, 조선의 왕에게는 가까이해선 안 되는 완물이었다.

조선에 서식하지 않는 ‘실물’ 공작을 경계했던 모습과 달리, 공작의 이미지를 활용한 ‘문양’은 조선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에서는 왕실의 의장용 부채에 공작이 그려져 용과 봉황에 다음가는 계급적 의미를 가진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20S1A6A3A01054082). 이 글은 2024년 11월 8일에 개최한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 <유라시아 세계 人·物의 이동과 교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尹承燾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luckysh85@naver.com
투고일: 2024. 11. 15. 심사완료일: 2024. 12. 24. 게재확정일: 2024. 12. 2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7..83>

특히 조선 전기 관료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단 다섯 명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공작흉배는 최고위의 서열을 보여주는 문양이었다. 명으로부터 수용한 흉배제도의 목적 자체가 등급의 차별을 두어 존비를 분별하는 데에 있었고, 조선에서는 그 목적과 함께 도식화된 일정한 양식까지도 준용하여 공작흉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수용했던 명 예제의 기준이 완화되고, 제도 전반에 조선만의 특징이 생기기 시작한 양산 이후 공작흉배는 점차 사라졌다. 명 조정의 1품 문관의 흉배였던 선학 문양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명 예제의 완화는 극소수의 특정 신분만이 사용하였던 공작의 문양이 조선 후기 오히려 공작우(孔雀羽)라는 장식의 형태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왕을 비롯하여 문무 관원은 융복 차림으로서 공작우를 좌우에 꽂아 장식한 우립을 착용하였고, 무관의 군복 차림인 전립에는 하나의 공작우가 정자에 매달린 형태로 장식되었다. 명에 종속되었던 관복제도가 변화하며 특정 신분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공작의 이미지는 조선 후기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공작의 이미지 그 자체인 수컷의 꽂지깃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높은 신분이 향유하였던 문화라는 상징만 남은 공작우는 여령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비되었다. 도식화되었던 공작흉배의 문양은 자유로운 깃털 장식의 형태로, 특수층의 계급을 드러내며 사용되었던 공작의 이미지는 다양한 계층이 모조품으로써 그 상징성만을 누리는 변화였다.

핵심어 | 공작(孔雀), 작선(雀扇), 흉배(胸背), 서경(書經), 공작우(孔雀羽), 모조품

I. 머리말

공작은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신조(神鳥)인 봉황(鳳凰)이나 주작(朱雀)의 원형 중 하나로 여겨져¹⁾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교류되었던 동물이다. 공작에 대한 동아시아 최초의 문헌 기록은 『산해경(山海經)』 해내경(海內

1) 공작은 특히 수컷 꽂지깃의 모양을 통해 보면 상상 속의 동물인 봉황이나 주작의 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봉황·주작의 길게 늘어진 꽂지깃이나 커다란 날개의 모습이 공작과 매우 흡사하고, 주작과 공작이 같은 한자인 ‘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작의 분포 지역이 곤륜(崑崙)으로 형상화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經)편에 등장하는 남방(南方)의 ‘공조(孔鳥)’로 추정되고, 그 뜻은 ‘커다란 새’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대(晉代) 곽박(郭璞, 276~324)은 ‘공조가 ‘공작(孔雀)’이라 하였다.²⁾ 『이아(爾雅)』에서는 ‘공작은 남해(南海)에서 자라고, 꼬리가 전부 자라기까지 칠 년이 걸리는데 길이는 육척 척(尺)이고, 펼치면 수레바퀴 같은 모양에 청푸른색이다’³⁾라고 하여, 공작의 생김새와 서식지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일찍이 중국인들은 공작의 서식지를 교지(交趾), 점성(占城), 파리(婆利:渤泥) 등 남만(南蠻)과 계빈(闍賓), 조지(條支) 등 서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재 동남아시아와 인도아대륙에 각각 분포하는 자바공작과 인도공작의 분류와 정확히 일치한다. 공작은 서식지와 관련하여 ‘월조(越鳥)’, ‘남객(南客)’ 등과 같은 별칭이 있었고, 『춘추원명포(春秋元命苞)』에서는 ‘화리(火離)’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⁴⁾ 화려한 무늬 덕분에 문금(文禽)을 대표하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대부터 중국이나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공작 또는 공작의 이미지를 이용한 물품이 소비되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공작의 꼬지깃을 이용해 만든 여성의 장신구를 사치품의 일종으로서 금지하였고,⁵⁾ 견훤은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며 공작이 그려진 부채인 공작선(孔雀扇)을 선물로 보내었다.⁶⁾ 고려 때는 중국으로부터 실제 공작새가 선물로서 전해진 기록도 있다.⁷⁾

조선에서도 공작은 알려진 날짐승이었다. 공작새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2) 『山海經』海內經, “南方有賴巨人, …… 有孔鳥. [郭璞云, 孔雀也.]”

3) 『爾雅』 권13, 釋鳥, “孔雀生南海, 蓋鸞鳳之亞尾凡五年, 而後成長六七尺, 展開如車輪, 金翠斐然.”

4) 『藝文類聚』 권91, 鳥類, “春秋元命苞曰, 火離爲孔雀.”

5) 『三國史記』 권33, 雜志2, 色服.

6) 『高麗史』 권1, 세가1, 태조 3년 9월.

7) 『高麗史』 권18, 세가18, 의종 11년 7월; 『高麗史』 권30, 세가30, 충렬왕 18년 윤6월; 『高麗史』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4월.

을 거쳐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기도 하였고, 문무 관원의 관복에 공작 문양을 수놓거나 수컷 공작의 꽁지깃을 활용하여 장식하기도 하였다. 공작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으나, 기존 연구는 관복에 쓰인 공작 장식과 관련하여 주로 복식사 측면에서 진행되었다.⁸⁾ 더하여 역사학계에서는 조선 초기 관복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공작 문양의 흉배가 사용된 점을 언급하였다.⁹⁾

공작은 조선에서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이를 활용한 문양도 조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공작이라고 하는 수입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글은 밖으로부터 유입된 문화 요소에 대해 조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속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의 유행이나 상징이 반드시 시대적으로 심오하고 특별한 동기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작은 고귀한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이는 그저 인간이기에 가지는 보편적 생각과 욕구에 의한 직관적 판단이었다. 이글에서는 조선 역시 그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8) 유희경, 「胸背考」,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胸背』,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8;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김영재, 「중국과 우리나라 흉배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3(3), 2000; 신경섭, 「한국의 烏羽冠과 중국의 鷩冠 비교 연구」, 『服飾』 50(4), 2000; 오경미·전혜숙, 「조선후기 흉배변화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3(1), 2000; 鄭惠蘭, 「中國胸背와 韓國 胸背의 比較 考察」, 『古文化』 57, 2001; 김문자,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韓服文化』 8(1), 2005; 장숙환, 「朝鮮後期 笠飾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하명은·이은주, 「날짐승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2007; 윤빛나, 「조선시대 입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진덕순·이은주, 「『의궤』를 통해 본 궁중 검기무 복식」, 『국악원논문집』 37, 2018.

9) 김윤정, 「조선초 관복제 정립과 禮의 법제화」, 『學林』 50, 2022.

II. 수입품 공작을 대하는 양면성

1. 진기한 금수, 공작새

문헌상 공작새가 한반도에 들어온 사례는 고려시대부터 종종 확인된다. 1157년(의종 11)에는 송(宋) 상인이 앵무와 공작, 기이하게 생긴 꽃을 고려 국왕에게 바쳤고,¹⁰⁾ 1292년(충렬왕 18)에는 원(元)의 강남조운만호(江南漕運萬戶)인 서흥조(徐興祚:徐興祥)가 앵무와 공작을 각각 두 마리씩 바치기도 하였다.¹¹⁾ 또한, 1363년(공민왕 12) 장사성(張士誠)은 흥건적 평정을 축하하며 비단과 양(羊), 공작 등을 고려에 보냈고, 공민왕은 그중 공작을 전(前)시중(侍中) 이암(李崑)에게 하사하였다.¹²⁾

고려로 유입된 공작이 어디서 지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왕실은 물론이고 권력자 개인이 소장하여 집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공민왕이 이암에게 공작을 하사하였다는 사례도 그러하고, 이규보(李奎報)가 최충헌(崔忠獻)의 집 뜰에서 노니는 공작을 보고 시를 쓰거나¹³⁾ 차약송(車若松)이 공작을 키우고 있는 재상 기홍수(奇洪壽)에게 그 상태를 묻는¹⁴⁾ 등 공작을 개인의 애완동물과 같이 자유롭게 길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에 들어오면 흥미로운 변화를 보인다. 1406년(태종 6) 대마도에서 남번(南蕃)의 배를 약탈하여 얻은 소목(蘇木)과 호초(胡椒), 공작을 보내오자, 사간원에서는 ‘진기한 금수[珍禽奇獸]는 나라에서 기르지 않는 것이 옛 교훈인데, 하물며 빼앗은 물건이야 말할 게 있겠냐’라고 하였다.¹⁵⁾ 외교적 선물이더라도 기이한 동물은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10) 『高麗史』 권18, 세가18, 의종 11년 7월 무자.

11) 『高麗史』 권30, 세가30, 충렬왕 18년 윤6월 을묘.

12) 『高麗史』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4월 임자.

13) 『東國李相國集』 年譜.

14) 『高麗史』 권101, 열전14, 諸臣, 車若松.

15)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9월 26일 임오.

이유는 옛 교훈이라고 말한 『서경(書經)』 여오(旅獒)편에서 찾을 수 있다. 여오편에는 서려(西旅)에서 보낸 커다란 사냥개를 기쁘게 받은 주 무왕(周武王)에게 소공(召公)이 간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소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와 눈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법도를 잘 분별하소서. 사람을 갖고 놀면 덕(德)을 잃고, 물건을 갖고 놀면 뜻(志)을 잃습니다. 뜻은 도(道)로써 편안하게 하고, 말은 도로써 대하소서.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않으면 공(功)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상한 물건을 귀하게 여겨 실용적인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풍족할 것입니다. 개와 말은 그 땅에서 난 것이 아니면 기르지 마시고, 진기한 금수는 나라에서 기르지 마십시오. 먼 곳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먼 곳의 사람이 오고, 보배로 여기는 것이 오직 현명한 사람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편안할 것입니다.¹⁶⁾

소공의 간언은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 나라에 없는 진기한 것들을 구하여 장난감으로 삼으면 뜻을 잃게 될 것이니, 물건이 아닌 먼 곳의 어진 사람을 감동시켜 찾아오게 하라는 것이었다. 공작을 무익한 것으로 보는 사간원의 시각은 이에 근거하고 있었다. 국왕에게 애완품이 생기는 현상을 경계하는 간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태종은 대마도에서 보낸 공작을 받아 상림원(上林園)에 두고 기르도록 하였다. 먼 곳에서 보낸 사람을 생각하며 공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공작의 유입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에 실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태종의 마음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세조는 직접 공작을 구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1462년(세조

16) 『書經』 「旅獒」 “不役耳目，百度惟貞。玩人喪德，玩物喪志。志以道寧，言以道接。不作無益害有益，功乃成，不貴異物賤用物，民乃足。犬馬非其土性不畜，珍禽奇獸不育於國。不寶遠物，則遠人安。”

8) 세조는 류큐[琉球] 국왕이 요청한 『대장경(大藏經)』과 다양한 선물을 주면서 이에 대한 회답으로 앵무와 공작을 보내어 교린(交隣)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였다.¹⁷⁾ 진기한 동물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생각되는데, 세조의 의지에 반대하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세조는 공작을 받진 못하였지만, 유구에서 대신 보내온 물소 두 마리를 창덕궁 후원에 두고 사복시(司僕寺) 관원에게 보살펴 기르도록 하였다.¹⁸⁾

이처럼 조선 전기 공작은 주로 대마도나 유구 등 일본 지역에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공작이 일본에 서식하지 않고 남번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오는 동물임을 고려하면,¹⁹⁾ 일본으로부터의 공작은 매우 귀한 선물이었다. 그럼에도 진기한 동물에 대해 유교 경전이라는 보편적 사상에 바탕을 둔 조정 관료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임진왜란 직전에 선조가 일본의 공작 선물을 받은 사건은 국왕이 진기한 동물을 철저히 거절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잘 보여준다.

1589년(선조 22)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부터 조선과의 교섭을 일임받은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平義智]가 조선에 와 공작 한 쌍과 조충을 바쳤다.²⁰⁾ 선조는 곧 경연 자리에서 공작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경연 관 허성(許箴)은 ‘일본의 성의가 가상하지만 진기한 금수는 본래 즐기는[玩] 바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놓고 기를 곳도 없으니 되돌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²¹⁾ 조선 초기 이래의 시각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이러한

17) 『世祖實錄』 권27, 세조 8년 1월 16일 신해.

18) 『世祖實錄』 권28, 세조 8년 4월 13일 무인.

19) 『看羊錄』 賊中封疏, 詣承政院啓辭, “福建商船及南蠻琉球呂宋等商船, 則義弘及龍藏寺句管, 我國行船, 則正成及義智句管. 驢騾·馳象·孔雀·鸚鵡之來, 歲歲不絕, 而家康等, 例以金·銀·槍劍重償之, 以無益換有益, 故彼亦樂來. 倭市中俱唐物蠻貨, 若其國所產, 則除金銀外, 別無珍異云.”; 『扶桑錄』(李景稷), 광해군 9년 7월 18일, “鳥獸之中, 不產鶯·鵲·虎·豹, 而孔雀亦非所產.”

20) 『宣祖修正實錄』 권23, 선조 22년 7월 1일 병오.

21) 『世祖實錄』 권23, 선조 22년 8월 1일 병자.

인식은 이제 신하가 아닌 국왕의 말로도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공작의 처리를 맡은 예조에서 태종 때의 전례가 있고 현실적으로 되돌려보내기 어려우니 장원서(掌苑署)로 보내 기르자고 하자, 선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신이 돌아간 뒤 제주에 놓아주겠다고 결정하였다.²²⁾ 실제로 당시 사신이 귀국한 뒤에 공작은 수송의 폐해가 있을 제주가 아닌 남양(南陽)의 절도(絶島)로 보내졌다.²³⁾

문제는 일본에서 진귀한 선물을 보내며 통교를 요청하고, 이에 1590년(선조 23)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지만,²⁴⁾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버렸다는 데 있었다. 공작을 데리고 대마도주를 사신으로 보낼 때부터 일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은 사신이 데리고 오는 공작을 보기 위해 몰려들어 길이 메이도록 혼잡했고, 도성 내 여염집은 텅 비어있었다시피 했을 정도로 공작 구경을 즐겼다.²⁵⁾ 왜란 이후 선조가 공작을 받은 사실은 교활한 오랑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언급되었다.²⁶⁾ 한양까지 진기한 금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거절했어야 했다는 인식이었다.

조선 후기에도 진기한 동물을 멀리하는 분위기는 이어졌는데, 아예 우연히 얻은 공작을 조선에 두지도 않고 청으로 보내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있어 흥미롭다. 조선 전기 공작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조선을 거치는 명과의 교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647년(인조 25)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앞바다에 표류한 복건(福建)의 한인(漢人) 상선(商船)에서 공작 세 마리와

22) 『宣祖實錄』 권23, 선조 22년 8월 4일 기묘.

23) 『宣祖實錄』 권23, 선조 22년 12월 21일 갑오.

24) 『宣祖實錄』 권24, 선조 23년 3월 6일 정미.

25) 『燃藜室記述』 권15, 宣祖朝古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26) 『光海君日記』 권6, 광해군 1년 4월 17일 무진, “政院啓曰, 日本國所送畫楊貴妃屏風, 極爲褻慢, 狡虜情狀, 有所難測. 安知不如孔雀之類乎.”

검창(劍槍) 여덟 자루를 얻게 된 일이 발생하였다.²⁷⁾ 이 배는 명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다. 즉,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역 물품 중 하나였던 공작이 뜻하지 않게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인조는 곧 조선에 오는 사신을 통해 공작을 청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이를 명령한 인조의 언급은 당시 청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인조는 “청인(淸人)은 먼 곳에서 나는 물건을 귀히 여기고 뽐내고 자랑하기를 주로 하니, 이번에 만약 한인의 배에서 얻은 공작을 보낸다면 저들은 필시 거만스레 스스로 잘난 체할 것”²⁸⁾이라고 하였다. 우연히 얻은 공작을 청에 보냄으로써 그들이 과시할 수 있는 특별한 물품을 선물하면서도 조선 내에서는 진기한 동물을 기르지 않는다는 명분도 챙긴 결정이었다.

하지만 청 사신이 많은 물품은 사라진 채 어떻게 물 위를 뜨지도 않는 공작만 건져낼 수 있는지 등 표류한 상선에 본래 있던 물품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²⁹⁾ 공작 선물 계획은 조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후 공작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으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저들의 환심을 사는 것”³⁰⁾이라는 인조의 생각처럼 조선에서 공작은 뽐낼 만한 귀한 선물이면서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완물이었다.

27) 『仁祖實錄』 권48, 인조 25년 7월 18일 정사.

28) 『仁祖實錄』 권48, 인조 25년 8월 3일 신미, “上曰, 淸人貴遠物, 而以矜誇爲主, 今若以漢船所得孔雀送之, 則彼必有倏然自大之心矣.”

29) 『承政院日記』 99책, 인조 25년 10월 5일 임신, “則勅使曰, 孔雀非浮遊水上之鳥, 四十九名, 非飛渡之人, 籠隻亦何以得出乎. 雖萬端發明, 少無可信之理, 不可如是答之. 漂漢一名, 則本國送人, 捉往東萊, 此亦可疑云.”

30) 『承政院日記』 98책, 인조 25년 8월 3일 신미, “上曰, 送其孔雀, 於意似可, 以非關之物, 得彼歡心, 或不無其理矣.”

2. 위계를 드러내는 공작 문양

조선에 서식하지 않는 ‘실물’ 공작을 경계했던 모습과 달리, 공작의 이미지를 활용한 ‘문양’은 조선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공작 문양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왕실의 의장(儀仗) 가운데 하나인 공작선이 대표적이다. 공작선은 작선(雀扇)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공작 문양이 그려진 의장용 부채를 말한다.³¹⁾ 조선에서 작선은 왕과 왕비, 세자의 의장에 모두 사용되었다.³²⁾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서 그 형태가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는데,³³⁾ 주색(朱色)을 칠한 손잡이와 함께 적색(赤色) 바탕의 부채에 좌우 대칭으로 꿩지깃을 가진 수컷 공작 두 마리가 그려진 형태였다[그림 1]. 이후 각종 의례에 등장하는 작선 역시 조선 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2].

왕의 경우 작선 외에도 봉선(鳳扇)·용선(龍扇)·청선(靑扇)이 있었고, 왕비는 작선·용선·청선을 썼으며, 세자는 작선과 청선만을 사용하였다. 봉선과 용선이 빠진 세자 의장에서는 작선이 가장 높은 등급의 부채였다. 의장의 목적이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엄하게 하는 데 있었다’³⁴⁾는 점에서, 공작은 군주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에 다음가는 계급적 의미를 가진 문양으로 사용되

31) 작선이 언제부터 의장물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황제의 거동 때 필요한 의장을 나타내는 노부(鹵簿)가 성립한 당대(唐代)부터는 작선이 등장하고 있다(『大唐開元禮』 권2, 大駕鹵簿·皇太后皇后鹵簿). 송대(宋代)에는 전정(殿庭)에 세워두는 의장 가운데 작선이 있었고(『宋史』 志96, 儀衛1, 殿庭立仗), 당송의 제도를 받아 1393년(홍무 26) 명에서도 황후와 황태자의 의장에 작선을 두었다(『大明集禮』 권46, 鹵簿2, 皇后鹵簿·皇太子鹵簿). 우리나라에서는 당송의 제도로부터 비롯된 예제가 고려를 거쳐(『高麗史』 권72, 지26, 여복1, 法駕衛仗·上元燃燈奉恩寺眞殿親幸衛仗·仲冬八關會出御看樂殿衛仗·西南京巡幸回駕奉迎衛仗) 조선까지 계속되어 주요 국가행사에 작선이 쓰였다.

32) 『國朝五禮儀序例』 권2, 嘉禮, 鹵簿, 大駕·法駕·小駕·王妃儀仗·王世子儀仗.

33) 『世宗實錄』 五禮, 嘉禮序例, 鹵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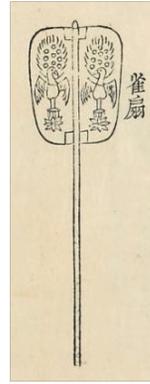
34) 『大明集禮』 권42, 儀仗, 總序, “儀仗者, 所以尊君而肅臣也.”

었다고 할 수 있다.

작선과 더불어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조선 예제에 포함된 공작 문양은 문관 관복에 수놓인 흉배에서도 확인된다. 흉배는 관복의 가슴과 등에 일정한 문양을 수놓아 장식한 표장(表章)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흉배는 명으로부터 수용한 제도이다. 명 조정의 관원에게는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 등 세 가지의 복식이 있었는데,³⁵⁾ 흉배는 일상



[그림 1] 『세종실록』 오례 작선



[그림 2] 『진찬의궤』(1877) 작선

적인 집무를 수행할 때 차려입는 상복에 쓰였다. 명의 흉배제도는 1391년(홍무 24)에 제정되어 1품부터 9품까지 모든 문무 관원에게 적용되었다.³⁶⁾ 문관 1품과 2품이 각각 선학(仙鶴)과 금계(錦鷄) 문양이었고, 3품 관원의 상복에 공작 문양이 수놓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명의 흉배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조선 예제의 성립은 당송시대의 고제(古制)와 시왕지제(時王之制)라 불린 명 예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³⁷⁾ 문무 관원의 관복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우선 1392년

35) 『大明會典』 권61, 冠服2, 文武官冠服, “朝服. 凡大祀慶成·正旦·冬至·聖節及頒降開讀詔敕·進表·傳制, 則文武官各服朝服. …… 祭服. 凡上親祀郊廟社稷·文武官分獻陪祀, 則服祭服. …… 常服. 凡文武官常朝視事.”

36) 『明太祖實錄』 권209, 홍무 24년 6월 4일, “文官一品二品仙鶴錦鷄, 三品四品孔雀雲雁, 五品白鸞, 六品七品鸞鷟鸕鶿, 八品九品黃鸞鸕鶿. 練鵲, 風憲官用獬豸. 武官一品二品獅子, 三品四品虎豹, 五品熊羆, 六品七品彪, 八品九品犀牛海馬.”

37) 한형주, 「조선 세종대의 고제연구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36, 1992; 한형주, 「對明儀禮를 통해 본 15세기 朝·明관계」, 『역사민속학』 28, 2008; 최중석,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2010;

(태조 1) 12월, 조선 관원의 공복(公服) 차림이 명에서 운용되고 있는 관복제도를 준용하여 제정되었다.³⁸⁾ 그러나 건국 초기 관복제도는 강한 규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복식을 통해 관원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³⁹⁾ 세종대 후반에 와서야 시왕지제에 의거하여 관원의 상복에 흉배를 직조하여 시각적으로 보다 강력한 구별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⁴⁰⁾ 다만 이때 영의정 황희(黃喜)가 ‘문양을 지나치게 쓰는 일은 검소를 숭상하지 않고 사치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흉배제도의 도입은 미뤄졌다.

조선에서는 명 관원들이 흉배를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신 교류를 통해서든 물론 명으로부터 실물의 흉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1430년(세종 12)에는 명 사신 윤봉(尹鳳)이 금실로 짠 기린흉배(麒麟胸背) 한 부(部)를 세종에게 바쳤다.⁴¹⁾ 기린은 백택(白澤)과 함께 명에서 공(公)·후(侯)·부마(駙馬)·백(伯)의 지위에 있는 황족 및 공신들이 사용하는 흉배였다.⁴²⁾ 또한, 황제의 하사품 중에도 다양한 형태의 흉배가 수놓인 필단(正緞)이 포함되어 있었다. 1450년(세종 32) 경태제는 등극조서(登極詔書)에 붙여 여러 하사품을 보내었는데, 이 중 세종에게는 사자흉배가 달린 홍색 필단 하나와 백택흉배가 달린 홍색 필단 하나, 기린흉배가 달린 청색·녹색 필단 각각 하나가 내려졌고, 왕비에게는 사자흉배가 달린 홍색 필단 하나와 기린흉배가 달린 청색 필단 하나가 전달되었다.⁴³⁾ ·

정동훈,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2012; 최중석,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 보편의 추구」, 『韓國史研究』 180, 2018; 윤승희, 「여말선초 對明 外交儀禮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38)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12월 12일 무오.

39) 김윤정, 앞의 논문, 2022, 120-122쪽.

40)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41) 『世宗實錄』 권49, 세종 12년 7월 19일 정사.

42) 『明太祖實錄』 권209, 홍무 24년 6월 4일, “花樣公侯駙馬伯用麒麟白澤.”

43) 『世宗實錄』 권127, 세종 32년 윤1월 1일 병오. 경태제 등극조서와 함께 전달된

명 조정의 흉배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명과 다른 관복 체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에서 자랐던 부사직 이상(李相)은 조선과 명의 제도에 다른 점을 몇 가지 상서하며, 명에서는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다른 모양의 흉배를 달아 등급의 차별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종친은 물론 관원 모두 외관상 구별되지 않으니, 명의 제도에 의거하여 준비를 분별하자고 한 것이다. 결국 1454년(단종 2) 문무 당상관 상복의 흉배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무관의 상복에 문장(文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가 명의 예제를 상고하건대, 문무 관원의 상복의 흉배에 양식(花樣)을 놓도록 이미 정식(定式)이 되어 있어서, …… 청컨대 이제부터 문무 당상관은 모두 흉배를 붙이게 하고, 그 양식은 대군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 제군(諸君)은 백택으로 하고,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雲雁)으로, ……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⁴⁾

명 문관 3품의 공작흉배는 이등체강(二等遞降)의 원칙에 따라 조선 문관 1품에게 쓰였다. 조선에서 1품의 문관은 원칙적으로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다섯 명뿐이었다. 정1품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종1품의 좌찬성과 우찬성이다. 조정 반열에서 우대받는 문관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며, 이들 관복에 수놓인 공작흉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당한 계급성을 보여주는 문양이었다.

흉배 사례 외에도 세종~예종대에 걸쳐 흉배가 수놓인 필단이 여러 차례 내려졌다.
44) 『端宗實錄』 권12, 단종 2년 12월 10일 병술, “請自今文武堂上官, 竝着胸背, 其花樣, 則大君麒麟, 都統使獅子, 諸君白澤, 文官一品孔雀, 二品雲雁, 三品白鶻, 武官一二品虎豹, 三品熊豹.” 단종은 문무 당상관의 흉배 착용을 공식화하기 열흘 전에 이미 해당하는 72명에게 단재(段子)를 내려주었고, 실록 기사에는 이것이 곧 조선 최초의 흉배단령(胸背團領)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端宗實錄』 권12, 단종 2년 12월 1일 정축). 단종대 정해진 흉배제도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명시되었다.



[그림 3] 유순정 초상 중 공작홍배
(경기도박물관 소장)



[그림 4] 정응두 무덤 출토 단령 중
공작홍배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홍배는 신분과 위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조선에서는 홍배제도의 목적과 각 문양의 상징을 수용하였고, 계급적 의미를 담은 제도 내에서 1품 문관이라는 최고위의 서열을 보여주는 공작홍배는 당시를 지배한 명 예제에 기대어⁴⁵⁾ 보편화되었다. 더하여 조선에서는 명에서 만든 일정한 양식의 홍배 도안까지 모두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공작홍배는 두 마리의 수컷 공작이 위아래로 마주 보고, 주변으로 구름과 모란, 물결 모양 등이 함께 수놓였는데[그림 3·4], 이 구도는 명대 홍배와 거의 동일하다.⁴⁶⁾ 명으로부터 수용한 홍배 도안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에 성립한 홍배제도는 양난을 거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문무관 홍배의 문양에 분별이 없어지고, 홍배를 수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 사이 본래 명 조정의 1품 문관의 홍배였던

45) 최중석, 앞의 논문, 2010.

46) 鄭惠蘭, 앞의 논문, 2001, 216쪽.

47) 『肅宗實錄』 권23, 숙종 17년 3월 19일 을사.

선학 문양이 조선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흥배의 구도는 날짐승 한 마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바뀌는 등 더 이상 흥배제도가 성립된 초기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⁴⁸⁾ 그리고 1744년(영조 20) 선학흥배가 보편화된 분위기에 따라 문관 당상관은 운학(雲鶴) 문양을, 당하관은 백한(白鵝) 문양을 쓰도록 상정하고, 이를 『속대전(續大典)』에 추가하도록 하면서⁴⁹⁾ 공작 문양은 흥배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Ⅲ. 깃털 장식으로 향유한 공작의 이미지

조선의 관료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1품 문관의 흥배에 수놓여졌던 공작 문양은 양난 이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을 지배했던 명 예제의 기준이 완화되고, 제도 전반에 조선의 고유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⁵⁰⁾ 공작 문양이 없어진 자리에는 선학과 같이 조선 전기에 사용할 수 없었던 명 조정의 흥배가 등장하여 또 다른 위계질서를 드러냈지만, 관복 체계에서 공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선조대 무렵부터 왕을 비롯하여 조정의 관원까지 공작의 깃털인 공작우(孔雀羽)를 장식한 관모 착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1597년(선조 30) 예조에서는 오랑캐 풍속에서 나온 우립(羽笠)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비웃는다며 다음 행차 때는 모두 입자(笠子)에 깃을 꽂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었다.⁵¹⁾ 우립은 깃의 종류인 주립(朱笠)이나 흑립(黑笠), 초립(草笠) 등의 좌우에 공작우를 세워 꽂아 장식한 것을 말한다.⁵²⁾ 전쟁을

48) 하명은·이은주, 앞의 논문, 2007, 4-5쪽.

49) 『英祖實錄』 권60, 영조 20년 8월 5일 기유.

50) 오경미·전혜숙, 앞의 논문, 2000, 127쪽.

51) 『宣祖實錄』 권92, 선조 30년 9월 6일 계사.

52) 장숙환, 「朝鮮後期 笠飾 研究」, 87쪽.

거치며 용복(戎服) 차림 즉, 철릭과 짝하여 관모로서 우립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던 것이다.⁵³⁾

모자류에 새 깃을 장식하는 행위는 고대인의 조류 숭배와 용맹함을 표현했던 풍습이 의식화되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때 지배층부터 악공(樂工)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에서 새 깃을 장식하였다.⁵⁵⁾ 이후로도 북방지역에는 이러한 풍습이 계속 남아있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도 모자류에 새 깃을 장식하는 행위는 북방민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조에서는 우립이 오랑캐 풍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쟁기 동안 자리 잡은 우립 착용에 대해 선조는 ‘백 리만 가도 풍속이 다른 법이고, 깃을 꽂는 제도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고칠 필요가 없다’며 예조의 말을 거절하였다. 모자류에 새 깃을 장식하는 형태는 이미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오랜 문화라고 본 것이다.

53) 『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8월 16일 임오, “上御羽笠蟒龍紅色戎衣, 佩弓劍, 乘小輿, 至仁政門外, 乘馬以行.”; 『肅宗實錄』 권8, 숙종 5년 9월 11일 계묘, “大閱于露梁. 上具戎服, 羽笠乘馬, 百官亦以戎服隨駕, 至露梁教場, 御帳殿.”; 『承政院日記』 877책, 영조 14년 8월 19일 기해, “上着天翼羽笠, 乘玉轎, 由仁化門, 出至仁政門.”

54) 신경섭, 앞의 논문, 2000, 90-91쪽. 김문자, 앞의 논문, 2005, 63-64쪽.

55) 『魏書』 권100, 열전88, 고구려,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舊唐書』 권29, 지9, 音樂2, “高麗樂, 工人紫羅帽, 飾以鳥羽.”; 『舊唐書』 권199, 열전149, 東夷·北狄, 高句麗,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그림 5] 철종 어진
일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6] 이창운 초상
일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초상화의 비밀』,
2011, 44-45쪽)



[그림 7] 안필호 초상
일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1, 218쪽)

용복의 관모로 기능했던 우립은 무관의 관복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 후기 군복(軍服)에 쓰인 전립(氈笠, 戰笠) 역시 공작우를 장식하였다. 전립은 공작우를 좌우로 꽂아 세우는 우립과 달리 갓 꼭대기의 정자(頂子)에 하나의 깃털을 매달아 늘어뜨리는 형태였다. 전립에 장식된 공작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종 어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관의 초상화인 이창운(李昌運, 1713-1791)과 안필호(安弼濩, 고종대)의 초상에 그려진 공작우는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철종은 공작의 눈이라고 불리는 꿩지깃의 동그란 눈의 무늬가 여러 개 겹친 모습이고[그림 5], 이창운은 크고 작은 공작우를 정자에 매달았으며[그림 6], 안필호는 공작우를 같이 매달지 않고 여러 장을 따로 장식한 형태로 그려졌다[그림 7].⁵⁶⁾ 제도화·도식화된 규정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작우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공작우 장식의 자유로움은 18세기 중반 홍대용(洪大容)이 연경(燕京)에서 중국인 엄성(嚴誠)과 조선의 의관제에 대해 나눈 아래의 사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56) 윤빛나, 앞의 논문, 2014, 38-39쪽.

[필자: 역암(力闇, 嚴誠의 字)이] 또 나에게 “모정(帽頂)은 무슨 물건으로 만드는가?” 하여, 내가 “모두 은으로써 한다.” 하였다. 역암이 “무관도 이같이 하는가?” 하여, 내가 “그렇다.” 하였다. 역암이 “품급(品級)에 대소의 구별이 없이 모두 동일한가?” 하여, 내가 “그렇다. 나라의 제도에 오직 망건과 관자(貫子)로 품급을 나눈다.” 하였다. 역암이 “공작령(孔雀翎)은 분별이 있는가?” 하여, 내가 “역시 동일하다.” 하였다.⁵⁷⁾

엄성이 조선 관원의 공작우(공작령)에 차별이 있는지를 묻자, 홍대용은 관품 등급에 구별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입자에 다는 끈이나 정자에 제한을 두었던 것⁵⁸⁾과 달리 정조대까지도 공작우 장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조선 전기 흥배가 가진 계급성에서 가장 극소수를 위한 문양으로 존재했던 공작은 조선 후기로 들어와 다양한 계층에 의해 장식으로서 널리 소비되었던 것이다. 이는 공작이 가진 상징성에서 비롯된 변화는 아니었다. 명 예제에 종속되었던 관복제도가 양난 이후 조선의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공작우 장식에 있어 청의 제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청에서는 화령(花翎)이라 하여 만주족의 예에 따라 공작우를 관모에 장식하였는데, 왕작(王爵)에 따라 공작우 눈의 무늬에 대한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⁵⁹⁾ 예를 들어, 패자(貝子)는 공작의 눈이 세 개, 진국공(鎮國公)과 보국공(輔國公)은 눈이

57) 『湛軒書』 外集, 권2, 杭傳尺牘, 乾淨衛筆談, “又問余曰, 帽頂以何物爲之. 余曰, 皆以銀. 力闇曰, 武官如此乎. 余曰, 然. 力闇曰, 不分品級之大小, 皆一搯耶. 余曰, 然, 國制惟以網巾貫子分品級耳. 力闇曰, 孔雀翎有分別耶. 余曰也一搯.”

58) 『經國大典』 禮典, 儀章.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 이상만 금옥(金玉)의 갓끈을, 은(銀)으로 만든 정자 장식을 쓸 수 있었다. 다만 대간(臺諫)·관찰사·절도사는 정자에 옥(玉)을 사용할 수 있었고, 감찰(監察)은 수정(水精)으로 만들 수 있었다.

59) 『欽定大清會典則例』 권65, 예부3, 儀制清吏司4, 冠服, “又定戴翎之制, 貝子戴三眼孔雀翎, 根綴藍翎, 鎮國公·輔國公戴雙眼孔雀翎, 根綴藍翎, 護軍統領·護軍叅領戴單眼孔雀翎, 根綴藍翎, 護軍校戴染藍鷺鷥翎.”

두 개인 공작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 사신이 ‘조선은 모두 공작의 꿩지깃을 매달고 있어 장복(章服)에 구별이 없다’⁶⁰⁾고 언급한 것처럼 조선에서 공작우는 계급적 차등을 드러내는 요소가 아니었다. 청에서는 고관대작만이 장식할 수 있었던 공작우였지만, 조선에서는 더 이상 자유로운 공작우 사용에 대해 그것이 참람(僭濫)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에서 사용한 공작우는 실제 공작의 꿩지깃이 아니었다. 조선 전기 공작우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역이나 진헌의 방식으로 간혹 유입되었지만,⁶¹⁾ 조선 후기 공작우는 조선 내에서 제작하여 소비하였다. 『심전고(心田稿)』에는 ‘우리나라에서 갖의 장식으로 쓰는 공작우는 다 가짜로 만들어 [假造] 물들인 것’⁶²⁾이라는 기록이 전하고, 순조대 부경사행을 다녀왔던 김정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輦直指)』에 의하면 청에서도 공작우는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⁶³⁾ 즉, 조선 후기에 보편화되었던 공작우 장식은 수공업자가 제작한 모조품을 공인(貢人)을 통해 왕실 및 개인 차원에서 구매하였던 것이다.⁶⁴⁾

60) 『承政院日記』 448책, 숙종 35년 5월 3일 계유, “迎接都監啓曰, 卽見遠接使移文, 則勅使以爲, 我國, 則職至一品, 然後可以頭插孔雀尾, 而今見此地之人, 至賤下類, 皆於戰笠上, 懸以孔雀尾, 章服無別云.”

61) 『成宗實錄』 권81, 성종 8년 6월 6일 신축; 『燕山君日記』 권31, 연산 4년 9월 19일 갑인;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0월 2일 계축; 『光海君日記』 권136, 광해 11년 1월 11일 을미.

62) 『心田稿』 권2, 留館雜錄, 留柵錄, “孔雀出南交諸郡, 五色玲瓏, 體艷尾長. 我國之用於笠飾者, 皆假造染色者也.”

63) 『燕輦直指』 권6, 留館別錄, 禽獸, “孔雀亦稀種. 凡所用花翎, 多假造云.”

64) 왕실의 경우, 물품 구매시의 목록과 수량을 나열한 발기(發記) 문서를 통해 공작우를 사들인 당시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입자발기(笠子發記)」(연대 미상, 藏-RD01830)에서 주립과 초립에 쓰일 공작우는 16냥, 전립에 쓰일 공작우는 9냥에 거래되었다. 입자의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립과 초립은 공작우를 좌우로 세워 꿰어야 하는 방식이고, 전립은 정자에 매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장서각에는 공작우 구매 기록이 보이는 여러 건의 발기가 남아있다.

높은 신분이 향유하였던 문화라는 상징만 남은 공작우는 하급 무관이나 아전(衙前)부터 정재(呈才)에 참여한 여령(女伶)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였다.⁶⁵⁾ 그 형태 역시 자유로운데,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幸班次圖)』에 보이는 하례(下隸)의 우두머리 격인 권도(權導, 權頭)는 흑립에 공작우를 달았는데, 융복 차림과 같이 좌우로 한 쌍의 깃털을 꽂았다(그림 8). 이러한 양식은 여령의 복식에도 등장한다. 정재 가운데 선유락(船遊樂) 춤을 추는 집사(執事) 여령의 모자에도 공작우 한 쌍이 장식되었다(그림 9). 여령이지만 군복과 같은 차림으로 검기무를 추는 복식에는 무관과 같이 정자에 공작우를 매단 모습도 확인된다(그림 10).



[그림 8] 『화성원행반차도』 중 권도(정조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9] 『진찬의궤』(1829, 장서각 소장) 선유락

65) 여령의 공작우 사용이 정착한 것은 연산군의 여악(女樂) 정책과도 관련된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 여악을 확대하며 중국으로 가는 조선 사신에게 대량의 공작우를 무역해오도록 여러 차례 명령하였다(『燕山君日記』 권31, 연산 4년 9월 19일 갑인; 『燕山君日記』 권60, 연산 11년 10월 2일 계축). 물론 조정에서는 값만 비싼 사치품일 뿐 국가 소용에 긴요한 물건이 아니니 무역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였다(『燕山君日記』 권37, 연산 6년 3월 22일 병자; 『연산군일기』 권43, 연산 8년 3월 20일 임진; 『연산군일기』 권45, 연산 8년 7월 6일 병자). 필요도 없는데 무역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사치품을 즐긴다고 명 조정에 알려지거나 무역할 대가(代價)를 수송하느라 역로(驛路)가 피폐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燕山君日記』 권45, 연산 8년 7월 6일 병자).



[그림 10] 신윤복 <쌍검대무> 일부
(출처: 진덕순·이은주, 앞의 논문, 2018, 355쪽)

이처럼 조선 초에 성립한 제도가 완화된 조선 후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관복 내에서 공작우하는 입식(立飾)의 형태로 공작의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최고위층을 위한 문양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공작은 그 상징의 사용을 제한하던 틀이 깨진 뒤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작의 계급적 이미지를 공작우의 형태로 누리게 된 것이다. 상층 계급의 행동 양식을 모방·공유하며 아래로 번져나가는 문화적 흐름이었다. 조선 후기 공작우는 모조품을 만드는 공인이 얼마나 선명하게, 다시 말해 실물의 공작우처럼 완성도 높게 만드는가를 두고 자랑거리가 될 만큼⁶⁶⁾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IV. 맺음말

공작은 조선에 서식하지 않았던 진기한 동물이었다. 공작은 대개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조정에서는 공작이 진헌될 때마다 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진기한 동물은 기르지 않아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이는 즐거움을 위해 무의

66) 『承政院日記』 716책, 영조 6년 12월 20일 갑인, “哀彼貢人, 何以支保, 士大夫處事, 豈不羞愧乎. 至於猪毛笠·紫水晶纓子·孔雀羽·紅衣等物, 亦貢出於貢人, 競相奔馳, 自誇其鮮明, 彼貢人, 外雖不言, 其心內, 將以爲何如也.”

함을 취하지 말라는 『서경』의 가르침이었다. 그럼에도 공작을 선물로 받았던 왕들은 쉽게 물리치지 못하였는데, 선조가 대마도주로부터 공작 한 쌍을 받고 얼마 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진기한 동물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해졌다. 공작은 뽐내기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겐 귀한 선물이겠으나, 조선의 왕에게는 가까이해선 안 되는 완물이었다.

하지만 한양으로 들어온 공작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여염집이 텅 비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실물의 공작을 보는 것은 조선 사람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 선현의 말로 공작 선물에 대해 간언했던 관원들도 공작이 눈앞에 있다면 그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공작의 진기함은 결국 희소성을 통해 위계질서를 직관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감정과 맞닿아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문양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암컷 공작이 아닌 화려한 꼬지깃을 가진 수컷 공작만이 공작이라는 문양이나 장식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왕실의 의장용 부채에 공작이 그려져 용과 봉황에 다음가는 계급적 의미를 가진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 관료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단 다섯 명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공작흉배는 최고위의 서열을 보여주는 문양이었다. 명으로부터 수용한 흉배제도의 목적 자체가 등급의 차별을 두어 존비를 분별하는 데에 있었고, 조선에서는 그 목적과 함께 도식화된 일정한 양식까지도 준용하여 공작흉배를 사용하였다. 두 마리의 수컷 공작이 위아래로 마주 보고 그 주변에 구름과 모란 등을 함께 수놓은 구조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수용했던 명 예제의 기준이 완화되고, 제도 전반에 조선만의 특징이 생기기 시작한 양반 이후 공작흉배는 점차 사라졌다. 명 조정의 1품 문관의 흉배였던 선학 문양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전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명 예제의 완화는 극소수의 특정 신분만이 사용하였던 공작의 문양이 조선 후기 오히려 공작우라는 장식의 형태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왕을 비롯하여 문무 관원은 음복 차림으로서 공작우를 좌우에 꽂아 장식한

우립을 착용하였고, 무관의 군복 차림인 전립에는 하나의 공작우가 정자에 매달린 형태로 장식되었다. 이들 공작우는 거의 다 실제 공작의 깃털이 아닌 제작한 모조품이었고, 이에 대한 제도화·도식화된 규정도 없었다.

명에 종속되었던 관복제도가 변화하며 높은 신분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공작의 이미지는 조선 후기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공작의 이미지 그 자체인 수컷의 꽁지깃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높은 신분이 향유하였던 문화라는 상징만 남은 공작우는 여령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비되었다. 도식화되었던 공작흉배의 문양은 자유로운 깃털 장식의 형태로, 특수층의 계급을 드러내며 사용되었던 공작의 이미지는 다양한 계층이 모조품으로써 그 상징성만을 누리는 변화였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 『經國大典』.
『高麗史』.
『國朝五禮儀』.
『大明集禮』.
『大明會典』.
『明實錄』(太祖-世宗).
『燃藜室記述』.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欽定大清會典則例』.

2. 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3. 연구 논문

- 김문자,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韓服文化』 8(1), 2005.
김영재, 「중국과 우리나라 흉배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3(3), 2000.
김윤정, 「조선초 관복제 정립과 禮의 법제화」, 『學林』 50, 2022.
신경섭, 「한국의 鳥羽冠과 중국의 鷩冠 비교 연구」, 『服飾』 50(4), 2000.
오경미·전혜숙, 「조선후기 흉배변화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3(1), 2000.
유희경, 「胸背考」,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胸背』,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8.
윤빛나, 「조선시대 입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장숙환, 「朝鮮後期 笠飾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鄭惠蘭, 「中國胸背와 韓國 胸背의 比較 考察」, 『古文化』 57, 2001.

진덕순·이은주, 「『의궤』를 통해 본 궁중 검기무 복식」, 『국악원논문집』 37, 2018.
하명은·이은주, 「날짐승흉배의 감정(鑑定)을 위한 기준 설정」, 『韓服文化』 10(3),
2007.

INFLUX AND CONSUMPTION OF PEACOCKS AND THEIR
DECORATIONS IN THE JOSEON DYNASTY

YUN SEUNGHEE (YUN, SEUNG HEE)

The peacock was an exotic creature that did not naturally inhabit Joseon and was mostly introduced through Japan. Whenever a peacock was offered to the royal court, ministers advised that rare animals not native to the kingdom should not be kept, adhering to the teachings of the *Book of Documents*(書經), which discouraged pursuing the useless merely for amusement. Though a prized gift to those captivated by its grandeur, the peacock was considered a useless and potentially corrupting object and unworthy of closeness to the Joseon king.

While real peacocks were discouraged, images of the bird were enthusiastically incorporated into Joseon decorative art. The peacock symbol held esteemed rank, appearing on royal fans and signifying a status just below the dragon and phoenix. Specifically, the peacock square marked the highest levels of official hierarchy and, in early Joseon, was reserved for only five officials. Derived from the Ming tradition, the Mandarin square established visual distinctions in rank, and Joseon adopted both the symbolic purpose and its standardized Ming-inspired design. However, after the invasions of the late 16th century, as Ming influences loosened and Joseon developed its own systems, the peacock hyeongbae gradually

disappeared, giving way to more common motifs, including the use of the peacock pattern by Ming's first-rank civil officials.

The relaxation of Ming's official traditions also led to the widespread use of the peacock feathers, which, in the late Joseon period, became a popular adornment for hats worn by the king and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officials wore a single gongjaku feather hanging from their hat in a distinctive style. As the once-restricted imagery of the peacock became more accessible, its use expanded beyond the elite, manifesting as vibrant plumage used widely in adornment. By then, the peacock's prestigious symbolism, once limited to the upper class, spread broadly—even entertainers like *gisaeng* incorporated peacock feathers into their attire. The once rigidly defined emblem evolved into a freeform decorative motif, allowing individuals across various social ranks to enjoy the symbolic prestige of the peacock, albeit often in imitation.

Key Words : peacock, peacock-patterned fan, Mandarin square, Book of Documents, peacock feathers, imitation